

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1.10.25>

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,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
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(제36조제3항관련)

1.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,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

구 분	기 능
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	1.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.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·훈련 3. 1차 및 2차 방사선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.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연구 5.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업무
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	1.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.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. 필요시 비상진료센터로 환자 이송 4.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
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	1.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.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.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4.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

2.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

가.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

(1) 일반기준

- (가)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 것
- (나)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
- (다)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할 것

(2) 개별기준

(가) 시설기준

시 설	개수	기 준
방사선피폭환자 진 료 구 역	1	1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

검 사 실	1	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
방 사 선 실 - 일반촬영실	1	
수 술 실	1	간단한 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1병상을 확보할 것
원 무 행 정 실	1	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·퇴원 및 의료보험 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
의 사 당 직 실	1	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
보 호 자 대 기 실	1	
주 차 장		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

비 고

검사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
(나) 인력기준

인 력	비 고
의사(전문의) 1인 이상	
간호사 3인 이상	

(다) 장비기준

장 비 명	수 량
<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>	
개인선량계	3
방사선 방호복	3
방사선 폐기물 수거통	1
표면오염 계측기	1
<일반 의료관련 장비>	
심장제세동기(心臟除細動機)	1
인공호흡기	1
주입기(Infusion Pump)	1
이동 X-선 촬영기	1
초음파검사기	1
산부인과 진찰대	1
심전도(ECG) 모니터	1
이동 모니터	1
부착형 흡인기	1
부착형 산소(Wall O ₂ unit)	1
혈액가온기(Blood warmer)	1

보온포	1
일반 X-선 촬영기	1
구급차. 다만,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	1

나.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기준

(1) 일반기준

- (가)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는 것
- (나)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
- (다) 방사선피폭환자의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

(2) 개별기준

(가) 시설기준

시 설	개수	기 준
방사선피폭환자 진 료 구 역	1	2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
검 사 실	1	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
방 사 선 실		
- 일 반 촬 영 실	1	
- C T 촬 영 실	1	
- 필 름 현 상 실	1	
수 술 실		회전익항공기의 착륙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착륙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- 대 수 술 실	1	
- 소 수 술 실	1	
중환자실의 병상	10	
입원실의 병상	300	
원 무 행 정 실	1	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·퇴원 및 의료보 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
의 사 당 직 실	1	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
보 호 대 기 실	1	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
주 차 장		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

비 고

검사실, 방사선실 중 CT촬영실, 수술실 중 대수술실,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
(나) 인력기준

인 력	비 고
○의사 - 응급의학,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4인 이상 - 내과 및 피부과 등 방사선 응급환자 치료관련 전문의 2인 이상	○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전문의 1인 이상이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방사선비상진료가 가능할 것
○간호사 - 12인 이상	
○그 밖의 인력 -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(구급차 1대당 각 2인 이상) - 방사선 안전관리사	○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

다. 장비기준

장 비 명	수 량
<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>	
개인선량계	6
방사선 방호복	6
방사선 폐기물 수거통	2
표면오염 계측기	2
<일반 의료관련 장비>	
심장제세동기(心臟除細動機)	2
인공호흡기	2
주입기(infusion pump)	1
이동 X-선 촬영기	1
초음파검사기(심초음파 가능한 장비)	1
식도위내시경	1
산부인과 진찰대	1
다채널 모니터	1
일반 모니터	1
이동 모니터	1
부착형 흡인기	1
혈액가온기(Blood warmer)	1
보온포	1
CT 촬영기	1
일반 X-선 촬영기	1
혈액성분검사기(CBC검사기)	1

혈액화학검사기	1
동맥혈가스분석기	
요성분검사기	1
혈액은행	1
구급차. 다만,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	1